

#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, 스카이라인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2018. 11. .  
제 출 자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제1항에 의거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, 스카이라인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관련근거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제1항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
- 「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7조

## 3. 위탁개요

### 위탁기간 및 비용

- 위탁기간 : 2019. 01. 01. ~ 2019. 12. 31. (1년간)
- 사 용 료 : 연 10,200천원 ※ 붙임 산출내역 참고
  -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, 스카이라인 사용료
  - 연 1회 사용료 부과
  -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.

### 위탁대상

-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

- 동강스카이라인 관리
- 마하생태관광지 본동지구 주차장, 공중화장실 및 생태터널 운영·관리
  - 주차장 1식, 화장실 2동, 생태터널

□ 시설현황

<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>

- 위치 :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324-1번지 외 1필지
- 시설규모
  - 생태주택관 (435m<sup>2</sup>) : 세미나실, 휴게실, 식당 등
  - 민박동 (314m<sup>2</sup>) : 4실
  - 주차장 1식, 가로등 5주
  - 부지면적 : 4,000m<sup>2</sup>

< 동강스카이라인 >

- 위치 :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196번지 외 2필지
- 시설규모
  - 스카이라인 L=200m, 점프대 H=11m, 데크산책로 L=70m, 출발지 및 도착지 타워 각 1식, 회수라인 1식, 짚라인 경관조명 및 비가림시설(220m<sup>2</sup>)

< 관광지(본동지구) 내 시설 >

- 주차장 : 면적 6,700m<sup>2</sup>, 122면(대형주차장 8, 소형주차장 114)
- 공동화장실 : 2개소(주차장 내 1개소, 생태관 뒤 1개소)
- 생태 터널 : L=29.5m

#### **4. 향후계획**

- 수탁적격자 심사 : '18. 11.
- 심사결과 보고 및 수탁자 선정 발표 : '18. 12.
- 위탁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 : '18. 12.

#### **5. 참고자료**

- 사용료 산출내역
- 관계법령 발췌서

## 마하생태주택관 등 민간위탁 사용료 산출내역

(사용기간 : 2019. 01. 01. ~ 2019. 12. 31. / 12개월)

### ○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예정금액(사용료) 산출

※ 공시지가 : 2018. 1. 1. 기준, 시가표준액 : 2018. 1. 1. 기준

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공시지가(원/㎡)	평정가격(원)	
토지	소계	2필지		4,000		172,800,000	
	미탄면	323	대	317	43,200	13,694,400	
	마하리	324-1	전	3,683	43,200	159,105,600	
구분	소재지	지번	건물명	연면적(㎡)	시가표준액(원/㎡)	평정가격(원)	
건물	소계		2동	749.66		498,446,800	
	미탄면	323, 3	마을공동구판장	매장	403.12	644,000	259,609,280
			(생태주택관)	보일러실	32.4	352,000	11,404,800
	마하리	24-1	단독주택 (민박동)	보일러실	31.43	463,000	14,552,090
				다가구주 택	282.71	753,000	212,880,630
① (토지+기타 평정가격) × 10 / 1,000						6,712,468	
② 부가세(10%)						671,247	
사용료(만원단위 절사)							
- 6,712,468원(①) + 671,247원(②) = 7,383,715원(①+②)						7,300,000	
- 7,300,000원(만원단위 절사)							

### ○ 동강스카이라인 예정금액(사용료) 산출

감정평가의뢰 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	265,480,000
① 감정평가액 × 10/1,000	2,654,800
② 부가세(10%)	265,480
사용료(만원단위 절사)	
- 2,654,800(①) + 265,480(②) = 2,920,280원(①+②)	2,900,000
- 2,900,000원(만원단위 절사)	

### ○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, 동강스카이라인 총 예정금액(사용료)

⇒ 7,300,000원 + 2,900,000원 = **10,200,000원**

# 관계법령 발췌

## 1.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2.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

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